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88
----------	------

2021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나. 제출일 : 2020년 8월 12일

다. 회부일 : 2020년 8월 21일

라. 상정일 :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4일 상정·심사보류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심사보류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2일 상정·심사보류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이병한)

가. 제안 이유

- 1)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2)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출연개요

- 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액: 2,237,582천원
 - 산출내역 : 전산년도(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17,212,165,492천원)×0.013%*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7.16~8.6)을 반영하여 출연금 산정: (현) 1만분의1.5 →(조정) 1만분의1.3

2)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

- 지방세정책 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3)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출연은 법적 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 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¹⁾」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2011.2.28.)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2021회계연도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²⁾를 얻기 위한 것임.

〈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요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조직현황

- 2011.4월 개원(영등포구 여의도동), 2017.9월 청사이전(서초구 양재동)
- 인력현황 (2020.8.14. 현재)

구분	총계	원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 등	사무직 등	파견공무원
정원	92	1	3	53	5	30	-
현원	71	1	2	35	3	23	7

※ 연구직(35명) : 연구위원직 20명, 초청연구위원 1명, 연구원직 14명

○ 조 직 : 이사회, 원장, 5실 4센터

- 5실(지방세제연구실, 지방세정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자치협력실, 경영지원실)
- 4센터(과표연구센터, 세외수입연구센터, 특례연구센터, 세정제도연구센터)
- 조직 변천 과정

연도	기구조정내역	비고
2011	○ 3본부 2실	○ '11.02~14.02 이사장 이원종(전 서울특별시장) ○ '11.02~14.02 원 장 강병규(전 행안부차관)
2015	○ 2본부 3실 4센터	○ '14.03~17.03 이사장 허남식(전 부산광역시장) ○ '14.04~17.04 원 장 허동훈(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	○ 2본부 1관 10실 5센터	○ '17.12~20.12 이사장 허성관(전 행자부장관) ○ '18.01~19.04 원 장 정성훈(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2020	○ 5실 4센터	○ '17.12~20.12 이사장 허성관(전 행자부장관) ○ '19.11~22.11 원 장 배진환(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같은 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2)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14.5.28.개정, '16회계연도부터 적용)있음.

- 이사회 및 감사
 - 이사회 구성 현황 및 임기

구분	대상	임기	구성
선임이사 (10인)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4인)	1년	대구시,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단체장(1인)	1년	충청남도 논산시장(부이사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3인)	1년	인천 계양구,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지방세 학식·경험 풍부한 자 (2인)	이사장 3년, 교수 2년	이사장, 교수
당연직이사 (2인)	원장	3년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감사 (2인)	지자체 추천 선임	2년	전라북도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재 원

- 전국 지자체 법정출연금(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수탁용역 등
 - 2020년 총 예산 : 12,378백만원 (출연금 11,392백만원)
- 출연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80,148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11,392
서울시	19,631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10	2,631	2,833
시본청	16,470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2,419)
자치구	3,161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6	384	414

- ※ 서울시(본청)은 9년간('11~'19) 140억원 출연(연평균15.5억원)
- ※ '17년분 서울시 출연금 미지급분(1,965백만원)은 2018년 예산반영 지급
- ※ 2020년도분 출연동의안 심사 보류로 현재까지 미출연

예산규모(년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4,070	5,709	7,626	8,315	7,466	8,406	21,758	13,719	12,897	12,378

주요사업

- 지방세·재정에 관한 정책 조사 및 연구
-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지방세·재정에 관한 정책 법령 정보 관리
- 지방세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생송사무 지원

나. 출연금 규모 적정성

1) 출연률 인하 확대 필요성

- 2021년도 서울시 출연금은 22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 산출액 대비 1억 8천 2백만원 감소(△7.5%)한 것임.

※ 산출내역 : 전전년도('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입결산액(17,212,165,492원)×0.013%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금 감소 사유는 지방세수의 지속적인 신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을 위해 적립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령”) 개정(예정)에 따른 것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현 행	개 선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0.015%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0.012%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0.7.16.~2020.8.6.

※ 영 개정(예정) 내용 :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출연률)을 현행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조정하되, 2021년에는 1만분의 1.3을 적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산·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 ----- ----- 1. -----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② (현행과 같음)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2.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3. 지방세의 연구·홍보
-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적용 특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적립 비율을 1만분의 1.3으로 한다.

- 한편, 2020년분 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출연 요구액 24억 2천만원)은 제289회 임시회(2019.9.3.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법정 출연률의 부당성, 출연률 인하 부진, 방만한 연구원 예산 운영, 연구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동의안 채택이 보류되어, 예산편성 및 출연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17년분 출연동의안도 보류되어 미지급 후 2018년도분에 합산하여 출연한바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예산편성 규모〉

□ 2020회계연도 예산 : 123억 8천만원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기 타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	대출상환	기 타
113.9 (92%)	9.9 (8%)	66.6 (54%)	39.5 (32%)	7.9 (6%)	6.7 (6%)	3.1 (2%)

[계정별 예산] 일반회계 121.5억원, 수탁용역특별회계 9.6억원 (전출금7.3억원)

* 사업비는 수탁연구비 포함

-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801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은 164억원(20년도분 미출연금 24억 2천만원 포함시)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이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96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4.8%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80,148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11,392
서울시	19,631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10	2,631	2,833
시본청	16,470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2,419)
자치구	3,161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6	384	414
시본청 점유율	20.4	20.2	20.7	14.5	25.6	20.3	19.8		33.4	20.7	21.2
시 전체 점유율	24.8	24.6	24.7	19.4	29.9	24.6	23.6	4.8	36.4	24.3	24.9

※ 2020년도분 출연동의안 심사 보류로 현재까지 미출연 중임(표 통계자료에는 포함하여 산출).

※ 2017년도분 미출연 후 2018년도분에 합산하여 출연

- 본 출연동의안(2021년도분)은 현행(영 개정전) 출연률(0.015%) 적용시 출연금 규모는 25억 8,185만원으로 산출되나, 개정 예정인 출연률(0.013%, △0.002%)을 적용하여 산출한 22억 3,758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률 인하 효과는 3억 4천 4백만원(△1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영 개정 전에 인하던 출연률을 적용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2년도분 출연률(0.012%) 적용시 출연액 : 20억 6,546억원(5억 1636억원, 20% 감소 효과 예상됨('21년도 적용 세입액 기준).

- 출연률 인하(예정)는 그동안 과도한 출연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출연률 인하 요구 수준(0.015% → 0.01%)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연구원 설립(2011년) 이후 출연금 규모는 매년 세입 규모 순증에 따라 출연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평균 증가율이 14.0%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출연률 인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및 출연률 증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80,146	3,940	4,597	7,062	7,237	7,136	8,267	9,536	10,136	10,843	11,392
서울시	16,470	795	953	1,430	1,501	1,446	1,636	1,966	2,078	2,247	2,419
전국	증가액	828	657	2,465	175	-101	1,131	1,269	600	707	549
	증가율	13.4%	16.7%	53.6%	2.5%	-1.4%	15.8%	15.4%	6.3%	7.0%	5.1%
서울	증가액	180	158	477	71	-55	190	330	112	169	172
	증가율	14.0%	19.9%	50.1%	5.0%	-3.7%	13.1%	20.2%	5.7%	8.1%	7.7%

※ 출연금 산정액 기준

< 출연률 인하 진행경과(주요내용) >

- 출연률 인하 개정 건의 : 행정안전부 세정과장 회의('17. 9월)
- 전전년도 보통세입결산액 0.015% → 0.01%
- 출연률 인하 개정 건의 : 전국지방세정협의회('17.10월)
- 출연률 인하방안 개선 요구 : 한국지방세연구원('17.11월)
- 출연률 인하 개선 요구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18.2월)
- 출연비율 인하 관련 전국 세정과장 회의 개선 건의('18.2월)
- 출연규모 및 기준 관련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방문 협의('18.10월)

- 행안부 주관 '19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개선과제로 제출('19.3월)
- 행안부(지방세정책과) 방문 협의 ('19.7월)
 - 세제과장 출장, 연구원 출연률 인하 등 관련 개선과제 실행 촉구 건의
-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면담 협의 ('19.9월)
 - 재무국장이 행안부 지방세정책관(국장)에게 연구원 관련 개선안 협조요청
-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면담 협의('20.1월)
 - 재무국장이 행안부 지방세정책관(국장)에게 연구원 관련 개선 협조요청
 - 지방세연구원 출연기준의 합리적 인하 조정 건의 : 0.015% → 0.01%
 -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건의
- 17개 시·도 세정과장 회의, 연구원 개선방안 논의('20.1월)
 - 개선과제 : 연구원 출연금 등 합리적 개선방안
 - ⇒ (행안부)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연구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 ※ 경기도(본청) '20년 출연금 일부삭감(5억원, 14.7억원→9.7억원)
-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출연률 인하계획 언급(전국세정과장회의) ('20.5월)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7월)
 - 출연률 인하 : 0.015% → 0.012% ('21년은 0.013% 적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은 법령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출연금 환수 필요

- 또한, 본 출연금은 영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일정비율(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보통세가 아닌 특정 용도(특별회계)에 전출하고 있는 목적세(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세입은 출연금 산정 대상 세목에서 제외하고 있음.
- 한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재산세를 구세로 구분하여 자치구 세입(「지방세기본법」 제8조)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같은 법 제7조제2항)로 분류하고 있음.
- 다만, 재산세 세세목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예외적으로 특별시세로

구분(같은 법 제9조제3항)하였는바, 본 세목은 서울특별시 세입 세목 이면서 동시에 보통세(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로써 연구원 출연금 산정 대상 세목으로 운영하고 실정이며,

※ 재산세는 시·군·구세이며 보통세임(법 제7조제2항)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서울특별시세이나, 재산세가 보통세이므로 출연금 산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구원 설립 후 서울시가 부담한 출연금 중 ‘재산세 도시 지역분’에 해당하는 출연 규모는 14억원(‘20년도분 포함) 수준임.

〈서울시_연도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출연금 산정액〉

(단위: 원)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16,373,030	94,150,160	141,225,240	147,925,940	148,936,220	157,256,610	164,377,280	174,366,850	186,308,810	201,825,920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1년부터 목적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되어 2012년분부터 출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

구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근거	<p>「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p>「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p>
세목 구분	<p>「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p>

	<p>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p> <p>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p> <p>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p> <p>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p>
(재산세 도시 지역분)	<p>○ 특별시세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규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div>

○ 다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종전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세이면서 목적세로 운영해오던 ‘도시계획세’를 「지방세기본법」 제정(시행 2011.1.1., 법률 제10219호, 2010.3.31., 제정)을 통하여 세목을 변경한 것으로,

— <구(舊)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개정 2010. 1. 1.>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레저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주행세 사. 삭제

<2010. 1. 1.> 아. 담배소비세 자. 도축세 차. 지방소득세 카.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공동시설세 다. 지역개발세 라. 지방교육세

○ 세목 이외에 세입 용도를 보통세로 변경 규정하였으나, 법령 제·개정 전의 경우와 같이 본 세목 세입을 도시개발법령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전액 특별회계로 지속하여 전출하고 있는 등 사실상 목적세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회계 전출 근거 법령 >

교부대상	재원	비율	교부 근거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정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9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①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법 제126조와 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주택사업	재산세	10%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대상	재원	비율	교부 근거	
특별회계 (재촉계정)	도시지역분		법 시행령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 운영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면서도 연구원 출연금에도 추가 전출함으로써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서울시만의 유일한 형태의 이중전출 구조의 비상식적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재무국은 기 지급된 출연금 환수와 함께 향후 출연금 산정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세목에 대하여 특별시세이면서 목적세로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권 침해

- 앞서 본바와 같이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일정 비율(0.015%)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강행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규모는 출연기관에서 소관예산을 편성하여 출연금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출연기관이 사업수익을 적게 계상하는 등 자체 수입을 축소 보고하여 출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감사 등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우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과정 없이 법령으로 강행 규정한 출연률을 적용 출연하고 있는바,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 예산편성 규모나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일률적인 출연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결과로 지방세연구원은 매년 발생한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79억원)하여 전액 청사매입(매입 총액 176억원)에 사용(2017.7.)하고,

〈연구원 기금 적립 집행 내역〉

□ 기금 적립내역

○ 총 적립액 : 7,920백만원(2013~2018년)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적립 원금	1,094.8	768.2	2,904.6	1,506.4	1,367.8	0
발생 이자	-	26.4	41.6	14.3	87	109

※ 2018~2020년 신규 적립액 없음.

○ 연도별 적립 상세내역

- 2014년 : 전년도 잉여금(1,368.2백만원) 중 768.2백만원 적립
- 2015년 : 전년도 잉여금(2,304.6백만원) 중 2,104.6백만원 적립
+ 추정시 기금적립금 편성하여 800.0백만원 적립
- 2016년 : 전년도 잉여금(856.4백만원) 전액 적립
+ 기금적립예산 650백만원 적립
- 2017년 : 전년도 잉여금(1,429.5백만원) 중 1,367.8백만원 적립
- 2018~2020년 : 신규 적립액 없음

□ 기금 집행내역

○ 적립액 전액 청사매입(2017.7)에 사용

※ 기금사용안 이사회 의결 : 2017년 제1차 이사회(2.27) 및 제2차 이사회(7.4)

○ 또한 청사 매입에 대한 차입금 114억 8천 4백만원(부동산 담보 7,690백만원, 기금 담보 3,524백만원 별도)을 발생시켜, 이를 2020년까지 4년의 기간에 전액 상환 하는 등 연구원 고유 목적사업과 무관한 청사매입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2019년도 결산결과 7억 8천 8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바,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서 발생한 과도한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청사 매입비로 사용한 것이 법령상 정한 출연금의 개념 및 사용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사 매입비 / 차입금 내역〉

□ 청사이전비(2017년)

○ 청사이전 비용 총액 : 17,607백만원

- 매입가(16,093백만원) + 시설공사 및 이전비용(1,514백만원)

※ 매입 재원

- 기금 4,211백만원 + 부동산담보차입금 7,690백만원 + 기금담보차입금 3,525백만원 + 예산 2,181백만원

□ 차입금 내역

○ 차입액 7,690백만원(부동산담보)

※ 기금예금담보 3,524백만원 별도(2018.3.26. 전액상환 완료)

□ 차입 상환 내역(2018~2020년)

○ 원금 76.9억원 전액 상환 완료 (상환일 : '20.7.6.)

- 2018년 상환 금액 : 33.2억원 (2018년말 잔액 : 43.7억원)
- 2019년 상환 금액 : 37.0억원 (2019년말 잔액 : 6.7억원)
- 2020년 상환 금액 : 6.7억원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액(A)	지출액(B)	차액(C=A-B)
지출총액	12,896,811,446	12,131,682,067	765,129,379
인건비	5,642,156,639	5,538,487,034	103,669,605
사업비	2,220,446,000	1,765,469,408	454,976,592
연구사업	1,054,312,000	720,550,522	333,761,478
자치단체협력	1,166,134,000	1,044,918,886	121,215,114
수탁연구비	271,047,075	233,967,620	37,079,455
경상경비	884,013,200	733,840,183	150,173,017
시설비	62,305,000	47,729,350	14,575,650
청사이전	3,812,192,833	3,812,188,472	4,361
예비비	4,650,699	0	4,650,699

※ 수입·지출 차액 : 787,797,178원

- 일반회계 잉여금 : 761,768,402원
- 수탁과제 이월금 : 26,028,776원

○ 이런 불합리한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출연기관의 설립은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하고, 출연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기관이 되어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인 등기 형태〉

관할등기소	법인가분	본/지점	등기번호	상호	주말여부	폐쇄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기타법인	본점	009021	한국지방세연구원	N	살아있는 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기타법인	본점	001165	한국지방세연구원	N	본점전출

※ 출처: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법인 등기사항 증명)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수법인 중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3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은 기타법인으로 등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연구원 설립 근거를 두고 특수법인(기타법인)으로 설립·등기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벗어나게 되어, 일체의 재정투자 없는 행정안전부가 연구원의 주무기관으로서 연구원을 관리·감독하게 되었는바,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강제로 정해진 출연금을 부담할 뿐 출연금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통제수단이 미미한 실정임.
- 그 효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정부 특히 행정안전부 고위 관료 출신의 임원 임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역대 원장 주요 경력〉

구분	성명	주요경력
1대	강○○ (2011. 2. ~ 201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행정부 장관 (2014) - 행정안전부 제2차관 (2009)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2008) -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2005)

2대	허○○ (2014. 4. ~ 2017. 4.)	-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 (2014) - <u>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u> 위원 (2013) -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2013)
3대	정○○ (2018. 1. ~ 2019. 4)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2019) - <u>국무총리소속 사회보장위원회</u> 위원 (2017)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11)
4대	배○○ (2019.11 ~ 현재)	- <u>행정안전부</u> 재난협력실장 (2018)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2017) - 강원도 행정부지사 (2015)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2013)

〈역대 경영기획실장 주요 경력〉

- 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실장, 경영기획실장 -

구분	성 명 (임용일)	인 적 사 항
1	심○○ (2015.02.02.)	- 강원대 행정학 석사 - <u>행자부</u> 세제과 팀장, 지방분권지원단 과장, 행자부 지방세 운영과장
2	조○○ (2018.04.02.)	- 중국인민대 행정학 석사 - 경기도 팀장, <u>행안부</u> 공기업과 서기관, 이북5도 평안남도 사무국장
3	서○○ (2020.06.22.)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 <u>서울시 38세급징수과장 · 자산관리과장 · 세무과장</u>

〈역대 자치협력실장 주요 경력〉

- 교육본부장, 자치협력실장 -

구분	성 명 (임용일)	인 적 사 항
1	노○○ (2018.05.09.)	- 대법원 파견(지방세쟁송사건 자문) - 경기도 세정과 팀장, 세원관리과장, 세정과장
2	구○○ (2020.06.22.)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및 한남대학교 경제학 박사 - 서산시 부시장,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장, <u>행안부 민간협력 과장</u>

※ 정관에서는 원장은 시도지사협의회 협의 추천 자증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5개 실장 중 경영기획실장과 자치협력실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하며, 나머지 지방세제연구실장, 지방세정연구실장,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연구직 연구위원 중에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서 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으로 법인등기 사항을 변경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합의를 통하여 주무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연구를 법령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연구원 체질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 고시 현황(38개소)을 보면 모두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되어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붙임1】 참조.

※ 행정안전부는 연구원의 주무관청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계획 및 예산 제출과,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제12조), 감독(14조), 지도·감사(제17조) 등 관리감독 권한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2조의 적용범위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연구원은 등기상 특수법인(기타법인)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또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서 기금 적립액 전부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출연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재정을 투자하여 설치한 기금을 연구원에 대한 출연에만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정부의 시행령 입법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바,
 - 이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연구원에 대한 출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지방세 연구활동에 재정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라. 서울시립대 교육관 운영 폐지

- 2018년 말 연구원은 지방세 교육수요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부족을 이유로 전국 1만여 지방세공무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부설교육관을 서울시립대학교에 유치한바 있음.
- 연구원은 교육관 유치를 통하여 서울시 위상을 제고하고 강북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경제효과 200억원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개관행사를 거쳐 교육관을 운영하였음.

※ 교육기관 1개 경제효과 약 200억원 추정 (18년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연구기초)

〈개관 행사 개요〉

- **현판식 행사** : 11.16(금) 13:20~13:30, 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 (참석자) 행정안전부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서울시의회의장, 관련 학회장 및 법무법인 대표 등 30여명
- **개관기념세미나** : 11.16(금) 13:30~18시, 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 (기념식) 개회사<연구원장>, 축사<행안부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서울시의회의장>, 환영사<시립대 총장>
 - (세미나) 국세-지방세 조정 및 지방세정발전방안 등 지방세제 관련 발표·토론

〈지방세교육관 설치 현황〉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소재)
- 임대조건 : 임대료 28백만원(보증금 없음), 관리비 6백만원
- 사무실 : 본관동 44㎡(14평, 2개 공간 사용)
- 강의실 : 100주년기념관 다-401호(91.6㎡), 필요시 세무전문대학원 강의실 사용 가능(100석 규모)

※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5명 소양일반과목 연중 강의 가능

〈2019년 지방세교육 운영 실적〉

- 교육 운영실적 : 전문교육 56회(2,284명) 교육 실시
 - 시립대 교육관 : 전문교육 31회(1,136명) 교육 실시
 - 연구원 교육관 : 전문교육 25회(1,148명) 교육 실시

○ 다만, 2020년 연구원의 지방세교육관 시설 제공 연장 요청에 대하여 서울 시립대학교 제1공학관 철거 등에 따른 학내 공간 부족으로 계약 연장이 체결 되지 못하여 결국 개관 후 1년만에 지방세 교육관은 폐지되었음.

○ 금년도 교육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축소 되어 교육장 수요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서울시립대 교육관 설치 추진 과정에서의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확충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간 결과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안정감 있는 계획 추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 13개 교육과정 운영, 1,360명(집합 기준) 교육(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계획 축소(당초계획: 16개 과정 2,660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788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나.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액: 2,237,582천원
 - 산출내역 : 전전년도(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17,212,165,492원)×0.013%*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7.16~8.6)을 반영하여 출연금 산정: (현) 1만분의1.5 →(조정) 1만분의1.3

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

- 지방세정책 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다.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출연은 법적 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 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세제과 세제정책팀 김병철 (☎ 2133-3353)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 1. 1만분의 1.5
 - ※ 비율변경(1만분의 1.5→1만분의1.2, 2021년은 1만분의1.3) 시행령 입법예고(7.16~8.6) 중
 -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3. 지방세의 연구·홍보
 -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